

#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7월 8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7월 15일

3.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신조, 개각, 공고,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현실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종전 충청북도공인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 출장소장의 도지사 전용공인 규정삭제
- 도지사의 직인을 공과금고지 및 필요문서 유인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신설

- 공인의 신조, 개각,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특정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5. 검토의견

충청북도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행정사무가 날로 다양화되는 행정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공인의 종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여 공인업무 추진에 명확을 기하였고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그외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 각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출납원 직명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였고 공인의 관수도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하던것을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토록 하였으며
- 인영의 인쇄사용은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 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인쇄방법 인쇄물의 관리 등에 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고

-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하고 증명발급등의 일반사무 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 부

-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